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17호

나. 발 의 자 : 박강산 의원

다. 발의일자 : 2025년 8월 8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안 제1조)
-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조례 목적에 추가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국제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됨.
- 특히, 한국문화는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류의 흐름이 ‘보는 문화’에서 한식, 관광 등 ‘경험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국제교류 또한 문화 수출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적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동 개정안이 제안한 조례 목적에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의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확장하고, 서울시 문화예술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문화교류 목적 강화 및 참여 주체 확대안(안 제1조 및 안 제6조제2호)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직접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가, 단체 등 민간이 자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난 4년간의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해외도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증가로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음.

< 2022~2025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차)
소요예산 (천원)	790,000	1,081,750	3,900,000	4,938,000
신청 건수	22개	57개	84개	84개
선정 건수	10개	16개	41개	47개
문화교류국가 (오프라인)	5개 단체 5개국	9개 단체 8개국	23개 단체 20개국	30개 단체 34개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모사업 규모 및 지원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성평가 항목에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정에 발맞춘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하는 등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제시한 국제문화 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대상에 ‘민간’의 범위를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박지수(2180-8115)
------	----------------	-------	----------------

의안번호
2917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박강산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목적의 범위 및 사업 참여 주체 확대 〈주요 입법요지〉 ○ 조례 목적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공공외교적 성격 강화 및 사업 참여 주체 중 ‘민간’을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확대					
추진경과	○ '25. 8. 8. 박강산 의원 등 23명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와 민간’의 사업 참여 범위를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함					
대응방안	○ 해당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팀장	강지연 (☎2133-2512)	담당	고지민(☎2133-2515)